

제301회 정례회
교육위원회

**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제안 설명**



2021. 06. 18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 동 현
(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1선거구 교육위원회)

□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,
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동구1 이동현 의원입니다.

□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86호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은 민주시민교육의 한 영역인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원칙을 조례 안에 규정함으로써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노동인권교육 담당 교원의 교수학습을 지원하며,

- 조문 오기(誤記)를 바로잡고, ‘직업교육훈련’ 및 ‘현장실습’ 용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에 대한 시민 신뢰 제고를 도모하며,

- 노동인권 및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을 마련하고,

- 전체 학교급의 노동인권교육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교

육과정과 연계된 노동인권교육이 시행되도록 지원하고,

- 현재 학생교육 및 교원연수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장애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본 개정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